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97-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의 목적	3
2. 사업의 목표	3
3. 지원 근거 및 내용	4
4. 추진 경과	5
5. 명칭	5
6.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흐름도	5
 제2장 사업운영-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
1. 개요	9
2. 운영 원칙	9
3. 조직	12
4. 인력	12
5. 시설	13
 제3장 사업운영-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15
1. 개요	17
2. 운영 원칙	18
3. 조직	22
4. 인력	22
5. 시설	23
 제4장 사업운영-중앙지원단	 25
1. 개요	27
2. 운영 원칙	28



제5장 사업 관리방안	31
1. 업무 추진체계	33
2. 성과평가	35
3.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용	37
4. 보고사항	43
5. 물품 등의 관리	45
6. 기타 행정사항	46
[관련서식]	47
[서식 1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신청서	49
[서식 2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신청서	50
[서식 3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서	51
[서식 4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서	52
[서식 5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계획서	53
[서식 6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	70
[서식 7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79
[서식 7-1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상세내역	80
[서식 8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81
[서식 9호] 예산전용조서	82
[서식 10호] 유형자산(비품) 관리대장	83
[서식 11호] 국고지원 물품 관리 라벨	84
[서식 12호] 결과보고서	85
[서식 13호] 정산보고서	92
[서식 14호] 성과보고서	94
[서식 15호] 서약서 예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15
[서식 16호] 내원 보호자 의료 만족도 조사지	116
[서식 17호]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120
[서식 17-1호] 장비계획 심의양식	121



2023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페이지	2022년 지침 (개정전)	2023년 지침 (개정후)																																																																														
24	■ 치료실 및 관찰시설 기준 ● 치료실 - 외부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을 구비하고,	■ 치료실 및 관찰시설 기준 ● 치료실 - 외부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휴대용 및 부착용 비상벨을 구비하고,																																																																														
29	■ 04 사업운영-중앙지원단 (5)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 04 사업운영-중앙지원단 (5)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 (추가) 각 지역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35	< 지표별 2022년 평가여부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과지표 항목</th><th colspan="2">지표 구분</th></tr> <tr> <th>기존 항목</th><th>신규 항목</th></tr> </thead> <tbody> <tr> <td>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td><td>●</td><td></td></tr> <tr> <td>1-2. 외부 유관기관 연계</td><td>●</td><td></td></tr> <tr> <td>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td><td></td><td>●</td></tr> <tr> <td>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td><td>●</td><td></td></tr> <tr> <td>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td><td>●</td><td></td></tr> <tr> <td>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td><td>●</td><td></td></tr> <tr> <td>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td><td>●</td><td></td></tr> <tr> <td>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td><td>●</td><td></td></tr> <tr> <td>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td><td>●</td><td></td></tr> <tr> <td rowspan="3">정성 평가</td><td>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td><td>●</td></tr> <tr> <td>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td><td>●</td></tr> <tr> <td>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td><td>●</td></tr> </tbody> </table>	성과지표 항목	지표 구분		기존 항목	신규 항목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	●	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	●	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	●	< 지표별 2023년 평가여부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과지표 항목</th><th colspan="2">지표 구분</th></tr> <tr> <th>기존 항목</th><th>신규 항목</th></tr> </thead> <tbody> <tr> <td>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td><td>●</td><td></td></tr> <tr> <td>1-2. 외부 유관기관 연계</td><td>●</td><td></td></tr> <tr> <td>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td><td>●</td><td></td></tr> <tr> <td>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td><td>●</td><td></td></tr> <tr> <td>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td><td>●</td><td></td></tr> <tr> <td>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td><td>●</td><td></td></tr> <tr> <td>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td><td>●</td><td></td></tr> <tr> <td>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td><td>●</td><td></td></tr> <tr> <td>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td><td>●</td><td></td></tr> <tr> <td rowspan="3">정성 평가</td><td>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td><td>●</td></tr> <tr> <td>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td><td>●</td></tr> <tr> <td>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td><td>●</td></tr> </tbody> </table>	성과지표 항목	지표 구분		기존 항목	신규 항목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	●	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	●	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	●
성과지표 항목	지표 구분																																																																															
	기존 항목	신규 항목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	●																																																																														
	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	●																																																																														
	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	●																																																																														
성과지표 항목	지표 구분																																																																															
	기존 항목	신규 항목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	●																																																																														
	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	●																																																																														
	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	●																																																																														

페이지	2022년 지침 (개정전)	2023년 지침 (개정후)												
40	<table><tr><th>구분</th><th>시설설비</th></tr><tr><td>치료실</td><td>-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td></tr><tr><td>관찰실</td><td>- 안전벽 - 안전문 - 폐쇄회로 텔레비전</td></tr></table>	구분	시설설비	치료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관찰실	- 안전벽 - 안전문 - 폐쇄회로 텔레비전	<table><tr><th>구분</th><th>시설설비</th></tr><tr><td>치료실</td><td>-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 안전벽 - 안전문</td></tr><tr><td>관찰실</td><td>- 원-웨이(one-way) 유리 설치</td></tr></table>	구분	시설설비	치료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 안전벽 - 안전문	관찰실	- 원-웨이(one-way) 유리 설치
구분	시설설비													
치료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관찰실	- 안전벽 - 안전문 -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분	시설설비													
치료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 안전벽 - 안전문													
관찰실	- 원-웨이(one-way) 유리 설치													
43	■ 시설·장비 구축 심의요청서 ● 사업 수행기관은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 구입경로, 금액 등을 적시한 심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설·장비 구축 심의요청서 ● 시설 및 장비계획 시 사전에 해당 시설·장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고가의 의료장비 및 기기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비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장비계획 심의를 지시하고, 중앙지원단은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원단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비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 -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보건복지부 4. 심의결과 통보 1. 장비 심의자료 제출 2. 장비 심의 지시 3. 심의 결과 보고 사업수행 지원 사업 수행기관 중앙지원단 [그림] 장비계획 심의 절차												

페이지	2022년 지침 (개정전)	2023년 지침 (개정후)																																										
		● 심의기준 - (승인기준)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 - (불승인기준) 사업목적 외 장비계획 - 항목별 상세 심의 판별 기준 <table><tr><th>구분</th><th>심의 세부항목</th><th>판정기준</th></tr><tr><td>1</td><td>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td><td>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td></tr><tr><td>2</td><td>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td><td>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및 활용계획</td></tr><tr><td>3</td><td>장비운용 역량</td><td>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td></tr><tr><td>4</td><td>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td><td>시설 확충 및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td></tr><tr><td>5</td><td>예산자원 활용도</td><td>예산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td></tr></table>	구분	심의 세부항목	판정기준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및 활용계획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시설 확충 및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산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구분	심의 세부항목	판정기준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및 활용계획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시설 확충 및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산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45	■ 기타 행정사항 ● 시설 및 장비계획의 경우, 사전에 ‘(가칭)시설·장비 심의지원반’으로부터 해당 시설·장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심의를 받아야 함	■ 기타 행정사항 ● (삭제)																																										
87	■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현황 <table><tr><th colspan="2">영유아기 (만 6세 이전)</th><th colspan="2">학령기 (만 7~18세)</th><th colspan="2">성인기 (만 19세 이후)</th></tr><tr><td>중증</td><td>경증</td><td>중증</td><td>경증</td><td>중증</td><td>경증</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학령기 (만 7~18세)		성인기 (만 19세 이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현황 <table><tr><th colspan="2">영유아기 (만 6세 이전)</th><th colspan="2">아동기 (만 7~12세)</th><th colspan="2">청소년기 (만 13~18세)</th><th colspan="2">성인기 (만 19세 이후)</th></tr><tr><td>중증</td><td>경증</td><td>중증</td><td>경증</td><td>중증</td><td>경증</td><td>중증</td><td>경증</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아동기 (만 7~12세)		청소년기 (만 13~18세)		성인기 (만 19세 이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학령기 (만 7~18세)		성인기 (만 19세 이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아동기 (만 7~12세)		청소년기 (만 13~18세)		성인기 (만 19세 이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페이지

2022년 지침 (개정전)

104

■ 행동발달증진센터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영역	항목
전문인력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인 이상
시설 등	·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구비된 관찰시설 1개 이상
	·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이 구비된 치료실 2개 이상
	·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

120

2023년 지침 (개정후)

■ 행동발달증진센터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영역	항목
전문인력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인 이상
시설 등	·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이 구비된 치료실 3개 이상
	· 원-웨이(one-way) 유리가 설치된 관찰실
	·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

■ 서식17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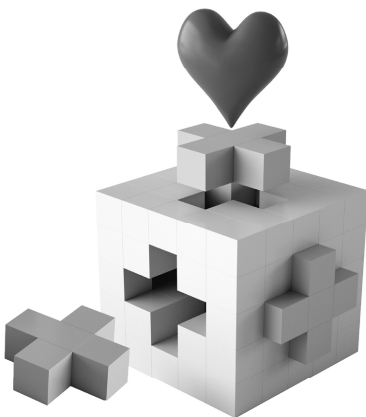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기관	기관명				
	전화		전자우편		
사업내역	구매대수	0000원 00종 00대	장비예산	국비	원
				병원부담	원
				합계	원
위의 사항과 같이 OO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비구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신 청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계획 심의양식 <서식 17-1호>					

페이지	2022년 지침 (개정전)	2023년 지침 (개정후)																																																
121		■ 서식17-1 장비계획 심의양식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장비계획 심의양식</th> </tr> </thead> <tbody> <tr> <td>장비명(한글)</td> <td colspan="2"></td> <td>모델명 또는 규격</td> </tr> <tr> <td>장비명(영문)</td> <td colspan="2"></td> <td>제조사 또는 대리점</td> </tr> <tr> <td>수량 및 단위</td> <td>수량:</td> <td>단위:</td> <td></td> </tr> <tr> <td>예정가격</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설치예정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r> <td colspan="4"> ☐ 기존장비대체 (기존보유대수 :) </td> </tr> <tr> <td colspan="4"> 취 득 구 분 사유: ☐ 노후화 ☐ 구식화 ☐ 고장수리불가(기술검토의견 첨부) </td> </tr> <tr> <td colspan="4"> ☐ 추가소요 ☐ 신규도입 ☐ 기타()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의 세부 항목</th> <th>설명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td> <td> - 도입 필요성을 긴급적 수치화된 근거와 기타 법적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식약처 허가여부, 임상적 유용성 포함) </td> </tr> <tr> <td>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td> <td> - 행동발달증진센터 구내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장소, 면적(㎡) - 유지보수 계획(예, 연1회 정기점검, 소모비용) - 월평균 사용횟수 및 시간, 추정 사용년수 - 수가 발생 여부, 연구계획 등 - 구 장비 등 활용계획(예, 처분 또는 재사용) </td> </tr> <tr> <td>3 장비운용 역량</td> <td> -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td> </tr> <tr> <td>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td> <td> -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td> </tr> <tr> <td>5 예산지원 활용도</td> <td> - 예산단가의 적절성 -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 예산확보 여부 </td> </tr> </tbody> </table> (중앙지원단 작성) 심의결과 - 중앙지원단은 심의세부항목에 따른 심의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장비계획 심의양식				장비명(한글)			모델명 또는 규격	장비명(영문)			제조사 또는 대리점	수량 및 단위	수량:	단위:		예정가격				설치예정일	년	월	일	☐ 기존장비대체 (기존보유대수 :)				취 득 구 분 사유: ☐ 노후화 ☐ 구식화 ☐ 고장수리불가(기술검토의견 첨부)				☐ 추가소요 ☐ 신규도입 ☐ 기타()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 도입 필요성을 긴급적 수치화된 근거와 기타 법적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식약처 허가여부, 임상적 유용성 포함)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 행동발달증진센터 구내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장소, 면적(㎡) - 유지보수 계획(예, 연1회 정기점검, 소모비용) - 월평균 사용횟수 및 시간, 추정 사용년수 - 수가 발생 여부, 연구계획 등 - 구 장비 등 활용계획(예, 처분 또는 재사용)	3 장비운용 역량	-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지원 활용도	- 예산단가의 적절성 -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 예산확보 여부
장비계획 심의양식																																																		
장비명(한글)			모델명 또는 규격																																															
장비명(영문)			제조사 또는 대리점																																															
수량 및 단위	수량:	단위:																																																
예정가격																																																		
설치예정일	년	월	일																																															
☐ 기존장비대체 (기존보유대수 :)																																																		
취 득 구 분 사유: ☐ 노후화 ☐ 구식화 ☐ 고장수리불가(기술검토의견 첨부)																																																		
☐ 추가소요 ☐ 신규도입 ☐ 기타()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 도입 필요성을 긴급적 수치화된 근거와 기타 법적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식약처 허가여부, 임상적 유용성 포함)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 행동발달증진센터 구내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장소, 면적(㎡) - 유지보수 계획(예, 연1회 정기점검, 소모비용) - 월평균 사용횟수 및 시간, 추정 사용년수 - 수가 발생 여부, 연구계획 등 - 구 장비 등 활용계획(예, 처분 또는 재사용)																																																	
3 장비운용 역량	-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인,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지원 활용도	- 예산단가의 적절성 -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 예산확보 여부																																																	

사업개요 01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목표
3. 지원 근거 및 내용
4. 추진 경과
5. 명칭
6.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흐름도





01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

〈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행동문제 관련 현황 〉

- ▲ 발달장애인의 14.7%가 미충족* 의료 경험 (장애인실태조사, '17)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 ▲ 발달장애인이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진료받는 과목 현황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18)
 - 정신과(소아정신과)(26.5%), 내과(25.5%), 신경과(15.8%), 재활의학과(9.1%) 순
- ▲ 문제행동 유형 및 심각도 (국립서울병원, '15)
 - 공격, 파괴, 자해, 지시불응, 감각추구, 떼쓰기, 배변 등으로 나타남
 - 공격(21%), 파괴(17%), 자해(16%), 떼쓰기(8%) 順으로 심각

2 사업의 목표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도모

3 지원 근거 및 내용

□ 지원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등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연 3억4천2백만원
 - * 예산 지원액은 2023년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건비
 - 행동치료실·관찰실 등 시설 리모델링비·장비비
 - 찾아가는 부모교육·발달장애인 협진 사례회의 등 사업비
 - 중증 발달장애 데이터 축적 및 행동 치료 관련 연구비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4 추진 경과

- 2012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 2013년 8월 국립서울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운영
- 2015년 「발달장애인법」 시행
- 2016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차 지정(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으로 거점병원 확대 근거 마련
- 2019년 8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차 지정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2019년 10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3차 지정(서울대학교병원)
- 2019년 12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4차 지정(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2020년 7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서울대학교병원)
- 2021년 7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5차 지정(성남시의료원, 온종합병원)

5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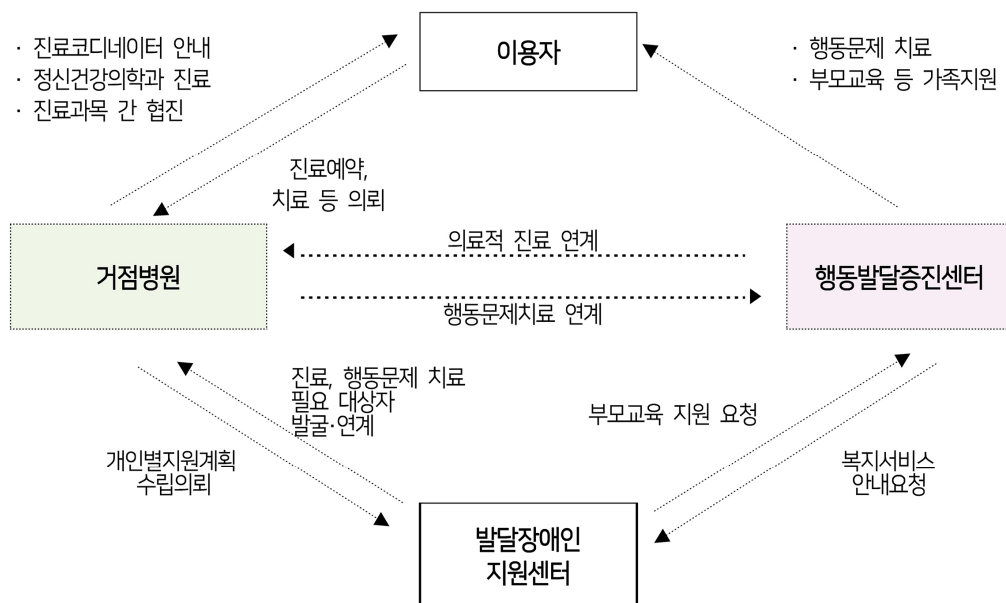
- 지정된 사업 수행기관의 명칭

〈일반명칭〉 ○○○시·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6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흐름도

- 이용자(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진료 코디네이터에게 병원 방문 일정 및 협진 과목 등 진료 의뢰

- 진료 코디네이터는 관련 진료과목 간 협진 일정 조정 및 방문일정 안내
- 중증행동문제의 경우 정신건강의학적 진료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행동문제 치료를 병행하여 진행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진료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또는 복지서비스 안내 요청 등 업무 연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등 업무 과정에서 병원진료 또는 중증행동 문제치료 등의 필요성을 발견할 경우 대상자를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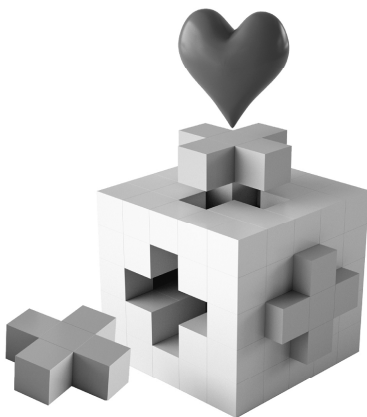
사업운영-발달장애인 거점병원

CHAPTER

02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1. 개요
2. 운영 원칙
3. 조직
4. 인력
5. 시설



02

사업운영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 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사업 내용

- 진료 코디네이팅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타진료과목 간 협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2 운영 원칙

-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 안내
- 발달장애인 협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강구
-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뿐 아니라 병원 전체적으로 인식 제고 등 발달장애인 친화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
- 중증 발달장애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행동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수행

(1) 발달장애인 진료편의성 제고 : 진료 예약 및 내원-외래-입원-퇴원 지원

- 의료기관은 병원 내 발달장애인 진료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발달장애인 진료 예약 및 내원 시 즉각 진료 코디네이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내원 시 전담 코디네이터 혹은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이 동행하여 병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시간과 동선을 최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제공
 - 자원봉사자 인력을 운영할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면 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관학과 학부생이나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 행동문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코디네이터는 관련 사항을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전달
-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진료과목별·의료진별 진료일정, 병원 이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또는 큰 글씨나 간략한 그림으로 설명한 안내 자료를 병원, 지역 보건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권장
- 진료 특성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
 - 발달장애인이 진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과목별 필요사항을 마련
 - 발달장애인이 진료과정 중 공격적 행동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역할(필요시 약물처방 및 신체 제한 처방) 및 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병원내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을 운영
 - 위기개입팀은 의사직(당직의, 전임의, 교수 등)과 간호직(약물처방이나 행동개입을 실시할 인력), 행동치료팀 등으로 이루어진 병원 진정팀과 보안요원 등의 병원 안전관리팀으로 구성



- ▶ 예시① : 영상의학과, 신경과 등 진료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혼자서 수행하게 되는 검사가 있는 진료과의 경우 보조인력이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예시② : 환자의 진료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과, 정형외과 등은 가급적 마취를 통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취과와 긴밀한 협진체계 마련

(2) 진료과목 간 협진 시스템 구축

-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치과, 마취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등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이 용이하도록 병원 내 체계 구축

- ▶ 예시① : 환자가 2개 이상 과목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시간대 또는 유사 시간대에 진료일정을 배치하는 등 환자의 동선 및 소요 시간을 최소화
- ▶ 예시② : 동일 환자에 대한 진료를 과목별로 각자 마친 후, 사례 회의를 통하여 환자의 건강 및 신체상태·진료 경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례를 통합 관리

-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에게 해당 발달장애인의 특성, 진료 시 유의사항 등을 고지하고 관련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및 소통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3)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부직원 인식 제고

- 병원 의료진 등 직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발달장애인 진료 시 의료진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유의사항 교육 등 인식개선 노력 연 1회 이상 실시
-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과목 진료실 및 관련부서 내 리플렛,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장애 관련 자료를 비치

(4)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

-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적 문제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중증 발달장애의 언어·인지·행동 문제 등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효과적인 행동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5)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의료본부로서 역할 수행

- 발달장애가 의심되거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환자에게 재활, 언어·운동·감각 통합 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환자들을 집중 치료
-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필요시 발달장애인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
-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의뢰
-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자문 및 질의 응대

3 조직

- 거점병원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를 반드시 포함하고,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내과·치과 등 해당 의료기관 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진료과목 3개 이상과 밀접한 협진체계를 구축함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임상심리사·특수학교 교사·언어재활사 등 치료 인력 각각에 대하여 역할과 구체적 직무, 업무 분담 시간을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함

4 인력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중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함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는 진료 일정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 기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함



❑ 발달장애인 치료 인력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 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11의4]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을 통과한 임상심리사
 -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제71조 및 제72조의2에 해당하는 언어재활사 1, 2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 2 및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 및 「의료법」상 간호사 등
- 각 치료인력에 대한 업무분장은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도록 규정하며, 특히 기존에 재활의학과 등 타 진료과에 소속되어 있는 치료 인력이 본 사업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하여야 함
- 치료일정과 치료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림

❑ 진료 코디네이터

- 진료 코디네이터는 진료 예약·치료 안내, 협진 의뢰, 행동발달증진센터 연계 등 의료기관의 업무 절차를 숙지하고,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함

5 시설

- 지정 의료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입원 편의를 위하여 분리병상을 운영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입원치료를 위하여 별도 병상을 운영 하는 경우, 1인실로 운영하고 모서리 안전장치·안전문 등 입원실 내 안전처리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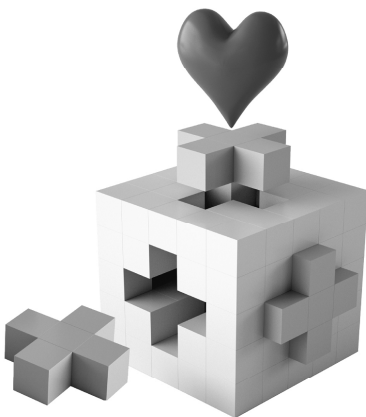
사업운영-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CHAPTER

03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1. 개요
2. 운영 원칙
3. 조직
4. 인력
5. 시설



03

사업운영 -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1 개요

□ 목적

- 자해, 타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행동문제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 행동문제 중증환자 판단기준 : 1)매우 낮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인지기능 능력을 갖고 있거나 2)자해·타해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3)CGI(Clinical Global Impressions) 5점 이상 또는 4)GAS(Global Assessment Scale) 40점 이하인 경우 5)기타의 이유(심한 상동행동 등)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중증환자로 판단한 경우

□ 사업 내용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대상	업무 비중
행동중재를 포함한 필요한 중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1:1 치료 개입	중증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60% 이상
가족지원	가족이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중증 행동문제가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20% 내외
지역사회 내 행동문제 중재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	행동문제가 있으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10% 내외
교육·훈련·연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행동 치료 관련 연구	복지관, 어린이집, 특수학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종사자	10% 내외

2 운영 원칙

- 중증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
- 정신건강의학적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 중증 행동문제 환자 1인당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으로 행동문제 치료의 우수사례 창출
- 중증 발달장애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행동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수행
- 자세한 치료기법과 지침은 서울대학교병원 중앙지원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2018)’ 참조
 -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ncmh.go.kr) → [자료실] → [센터 자료실]
 - * 서울대학교병원 중앙지원단 홈페이지(nadd-snuh.org) → [중앙지원단] → [자료실]



(1) 치료대상자 초기 면담 및 기능 평가 실시

-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건강상태와 기능 상태(인지-작업-생활기능) 및 행동문제 심각도 검진 후 필요 시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연계할 수 있음
- 치료대상자 연계 시, 초기 면담을 통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방법과 절차, 진행 가능한 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 대상자와 보호자(부모)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정 의료기관은 해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행동중재 프로그램, 일정, 담당자 등 사항을 적시한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 초기면담 시 작성사항 : 치료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실시 방법에 따른 행동치료(지원) 전문가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치료 참여 서약서, 치료 경력, 유관 서비스 이용현황, 사후관리 동의서 등
- 행동발달증진센터장을 중심으로한 센터 내·외의 치료팀은 치료대상자의 건강, 기능 및 행동문제 상태에 기반하여 향후 중재계획을 수립함
 - 대상자 관찰 및 진단을 통해 행동기능 분석(Behavior Problems Inventory ; BPI-01) 혹은 포괄적 문제행동 평가도구(Korean Comprehensive Scale for the Assessment of Challenging Behavior in Developmental Disorders ; K-CSCB) 등을 포함한 평가 방법을 사용, 이후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 수차례 실시
 - 행동기능 분석 결과에 따른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중재계획(Behavior Intervention Plan ; BIP) 수립
 - * 행동문제 중재계획 수립 시 가족 구성원 1인, 대상자의 학교·직장 등 관계자 1인 이상의 의견수렴 권고
- 행동문제에 대한 초기 진단, 치료 중간 및 종결 시기에 행동문제의 완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2)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중재

- 행동치료가 진척됨에 따라 증상의 완화 정도에 맞추어 중재 실시

▶ 예시 : 중증기에는 입원치료 또는 주 3회·매회 100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고, 과도기에는 통원 치료 및 가정·학교 등 환자가 친근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법 실시, 완화기에는 주 1회 통원 치료 및 월 2~3회 의료진의 가정 등 방문치료 실시 (본 내용은 예시이며, 각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료를 실시함)

- 중증 행동문제를 보이는 대상자 1인당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중재와 관찰·개입,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함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치료 종결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인별로 치료 단계에 따른 치료 성취도 측정지표 관리 등 사례 관리에 철저를 기함

(3) 발달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대상 중재

-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등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행동문제 교정에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
- 선행사건 예방·긍정적 행동 지원·대체 행동 지원 등 가정 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중재 기법을 교육함
- 부모교육은 자녀 치료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를 개별적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행동문제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연계함
- 의료진과 치료 전문가는 치료 시작 후 약 2개월 주기로 보호자(부모)와 환자의 치료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환자에 대한 개별치료가 종결되기 2주 전 종결사항에 대하여 상의함

(4) 전문성 향상 노력

- 행동발달증진센터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치료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
- 센터 인력에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ABA),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ESDM(Early Start Denver Model), TEACCH(Treatment and Education of Autistic and Related Communication Handicapped Children) 프로그램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치료기법을 교육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함

(5) 거점병원과의 연계

- 사업을 담당하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주1회 4시간 이상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치료자 회의, 사례 회의, 환자 관찰 및 보호자 면담 등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행동문제 치료와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통합 및 연계하여 지원

(6) 지역사회와 연계

-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된 환자가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복지관, (특수)학교, 직업훈련 관련 시설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지원계획 및 문제행동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연계 후 지속적인 치료방안을 공동 모색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훈련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부모상담, 중증 행동문제 치료 대상자 발굴(outreach)을 실시함
 -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연계되어 행동문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
- 특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조직

- 행동발달증진센터장, 행동치료 전문가,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각각에 대하여 치료 단계별 역할과 구체적 직무를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함
- 행동문제 중재 시 약물치료 필요, 응급 의료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마취과 등 병원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

4 인력

□ 행동발달증진센터장

- 행동발달증진센터장은 지정 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하며, 겸직이 가능
- 주1회 4시간 이상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중증 행동문제 치료에 참여해야 함

□ 행동치료 전문가

-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로서, 슈퍼비전을 포함한 관련 임상수련 경험 400시간 이상을 확보한 자
- 관련 자격증 현황

명칭	발급기관	세부내용
BCBA-D	미국 행동분석가자격위원회(BACB)	- 박사급 이상 - 관련 교과목 이수 필
BCBA	미국 행동분석가자격위원회(BACB)	- 석사급 이상 - 관련 교과목 이수 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 석사급 이상
임상심리전문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 석사급 이상
특수교사	교육부	- 석사급 이상
정신건강 간호사	보건복지부	- 석사급 이상
행동분석전문가	한국행동분석학회	- 석사급 이상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석사급 이상
작업치료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석사급 이상

※ 위 자격증은 필수요건은 아니나,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입증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

- 행동발달증진센터에는 1인 이상의 행동치료 전문가가 상주할 것을 권장

□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학사급 이상의 전문가로서, 수퍼비전을 포함한 관련 임상수련 200시간 이상을 확보한 자
- 관련 자격증 현황

명칭	발급기관	세부내용
BCaBA	미국 행동분석가자격위원회(BACB)	- 학사급 이상 - 관련 교과목 이수 필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학사급 이상
정신건강 간호사	보건복지부	- 학사급 이상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학사급 이상
작업치료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학사급 이상

※ 위 자격증은 필수요건은 아니나,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입증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

- 행동발달증진센터에는 1인 이상의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가 상주할 것을 권장

5 시설

□ 시설 구비 원칙

- 최중증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행동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함
- 지정기관에서는 행동문제 치료대상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구비함

▣ 치료실 및 관찰시설 기준

● 치료실

- 행동문제 치료 시 치료대상자와 치료자가 다치지 않도록 벽면, 문, 모서리, 필요시 바닥 등에 쿠션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안면·무릎 등 보호대, 보호복(간편 복장 등)을 구비함
- 응급 위기상황,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휴대용 및 부착용 비상벨을 구비하고, 행동치료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장비(CCTV 등)를 구비함
- 행동문제 치료 도중 치료대상자나 치료자가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 사고가 났을 때 치료대상자 및 치료자가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목록 미리 작성해 두고, 치료자는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관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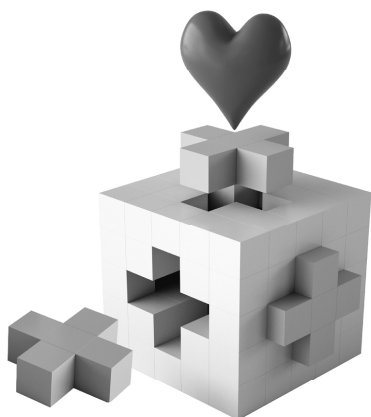
- 원-웨이(one-way) 유리를 한쪽 벽면에 설치하여 보호자(부모)가 치료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행동치료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함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 안전 목적으로 치료 과정이 녹음, 녹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사업운영-중앙지원단

CHAPTER 04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1. 개요
2. 운영 원칙



04

사업운영 - 중앙지원단

1 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 진료-연구-교육 역량 강화 및 의료서비스 표준화와 질 향상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사업 대상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사업 내용

- 지역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 연계 구축
- 발달장애의 진단·치료·관리 표준화 및 질 향상
- 발달장애 병태생리·진단·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획 및 추진
- 발달장애 치료인력 및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전략 수립·지원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 대국민 발달장애 인식개선

2 운영 원칙

- 각 지역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 진단·치료·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적·정책적·기술적 전략 수립

(1) 거점병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 거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협의체 운영
 - 발달장애인 진단·치료·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
-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사업별 분과위원회를 조직·운영
 - 임상, 교육, 연구, 홍보 등의 주요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 각 분과는 중앙지원단의 추진사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고, 필요시 분과 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발달장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음

(2) 발달장애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 발달장애 진단·치료·관리를 표준화하여 각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발달장애인의 진단과 치료를 적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상가이드라인개발·보급

(3) 발달장애 치료인력 및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국내외 최신 증거기반 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국내외 우수 발달장애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치료진 및 유관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행동문제 치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 마련 및 (임상)교육 실시

(4) 발달장애 병태생리·진단·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획 및 추진

- 거점병원 공동연구사업 개발 및 임상·기초 연구 기반 마련
 - 거점병원 코호트 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 진단-평가 도구 및 치료 프로그램 관련 연구
 -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임상 시험 등

(5)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기관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 지원
- 기타 지정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각 지역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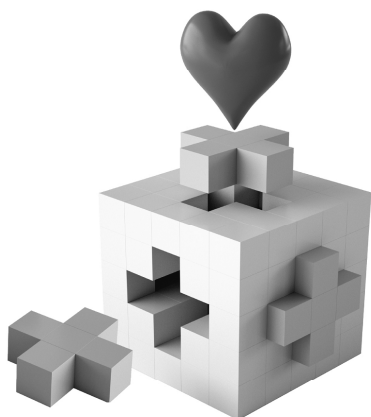
(6) 대국민 발달장애 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사업
 - 각 거점병원의 발달장애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지원
 -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기획 및 추진

사업 관리방안 05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1. 업무 추진체계
2. 성과평가
3.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용
4. 보고사항
5. 물품 등의 관리
6. 기타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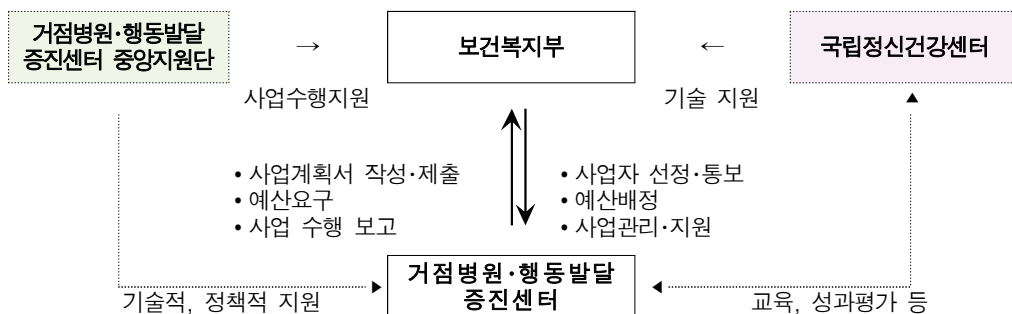


05 사업 관리방안

1 업무 추진체계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업무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 수립
 - 예산교부 및 관리·감독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실시
- 국립정신건강센터
 - 발달장애인 행동치료 전문인력 교육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현황파악 및 노무·행정 지원 등 운영 컨설팅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기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 지원
 - 기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논의 등 지원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성과평가 지원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 단계	사업 절차	추진주체
사업 수행기관 지정	지정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보건복지부, 지정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지정·통보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및 국고보조금 신청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사업실시	의료서비스 제공, 행동 치료 등 사업수행	수행기관
	수행실적 보고(연1회), 사업성과 보고(3년주기)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위원회)
사업성과 관리	성과평가 및 피드백 - 매년마다 성과평가(서면+대면평가) - 매3년마다 재지정 심사(서면+현장평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2 성과평가

□ 성과평가 개요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 및 재지정 심사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3년 성과평가 운영기준 및 방법

〈 지표별 2023년 평가여부 〉

영역 구분		성과지표 항목	지표 구분		2023년 평가여부
			기존 항목	신규 항목	
정량 평가	1.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치료 접근성 제고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적용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		
	2. 행동문제증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3. 행동발달증진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4. 부모,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 만족도 제고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		
정성 평가	1. 사업계획서 대비 결과보고서의 사업 단위별 수행 정도		●		
	2. 발달장애인 대상 협진의 적절성		●		
	3. 발달장애인 대상 행동문제 지원의 적절성		●		

● 성과평가 방법

- 정량평가 지표는 기관별 상대평가가 아닌 해당 기관의 전년도 실적과 해당연도 실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한 절대평가 체계이며, 해당 지표들의 평가등급 구간을 설정하여 적용함

〈 정량지표 평가등급별 득점율 〉

평가등급 구분	S	A	B	C	D
배점 대비 득점율	100%	90%	80%	70%	60%

- 정성평가 지표는 기관별 실적보고서 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며, 사전평가 이후 기관별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평가를 진행함

□ 성과평가 운영 일정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연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기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함

〈 평가프로세스 운영일정 〉

No	평가프로세스	일정	비고
1	평가용 연간 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기관별 제출(정량평가 실적 및 정성평가용 보고서) 연간 실적 기준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기관별 작성 → 복지부 제출
2	정량평가 증빙확인 및 평가	2월 중	복지부 확인
3	심사위원단 정성평가 및 추가 검토자료 요청 정성평가용 실적보고서 사전 검토후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관에 요청	2월 중	심사위원단 구성 및 평가운영
4	심사위원단 면접평가 사전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면접평가 실시	3월 초	집합 면접평가
5	정성평가 결과 취합 심사위원단 최종 평가 및 복지부에 결과 제출	3월 초	복지부 취합
6	평가결과 1차 공지	3월 중순	1차 공지
7	소명평가 운영 기관별 이의 제기 시 재심 및 확정 (정량평가 주체)복지부, (정성평가 주체) 심사위원단	공지 후 2주 이내	기관별 소명
8	연간 실적 최종확정 및 공고	3월 말	최종 공지

* 사업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동 가능

3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용

□ 총칙

- 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비를 타 계정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정부보조금과 병원 자부담 계리)
- 정부보조금을 운용하는 회계관리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및 관리
 - 법인 차원에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센터장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센터 내부의 회계관리 직원이 별도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 모든 처리과정(교부신청, 집행관리, 정산 등)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 www.gosims.go.kr)으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확보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12월 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함

□ 예산의 지원

- 지원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
- 지원 범위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국비 100%
- 지원 금액 : 해당연도에 확보된 거점병원 운영예산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 수행기관당 운영 예산은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 수행기관은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액과 예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적시하여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의무사용)을 통하여 예산 신청

- 보건복지부는 장비 구입 및 시설 설비의 타당성, 기타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행기관의 사업·예산계획을 승인한 후 교부
- 예산 집행의 책임은 지정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감독 책임 보유
-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보건복지부는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
 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 수탁기관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집행 시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사용이나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예산 집행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구비
- 예산과목 및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편성지침
인건비 (110)	보수(01)	● 직원에 대한 보수 : 동 사업의 전담인력에 지원(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 동 사업 수행 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써 동 사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동 사업의 PM(행동발달증진센터장) 포함) 수당 지급 가능
	일용임금 (04)	● 임시직(일용직, 기간제)에 대한 보수 - 육아휴직, 병가휴직, 단기업무종사자 대상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소모성 물품(치료도구) 구매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편성지침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 팜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비롯한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큼 제공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교육 강사로 지급 - 업무 관련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 교육의 경우 어떤 교육인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에 나타낼 것 ※ 회의 계획 일정 사업계획서 회의(회의 일정 및 자료 필수증빙) (예 : 교육 - 부모교육 30,000x2회x30인)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현판, 현수막 교체용 예산은 집행 자체 ※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공공요금 및 제세(02)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제세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여비 (220)	국내여비	- 국내여비의 경우 영수증 및 관련 참석 자료 첨부
	국외여비	- 국외여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관련 사항 상세 서술 및 보건복지부 심의 필수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 회의비, 간담회 등 소요경비
연구비 (260)	연구비(01)	- 연구의 경우, 어떤 연구인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명시 (정산보고서 제출 시 연구 결과 제출 필요)
건설비 (420)	시설비(03)	- 시설 개보수(신규 개소의 경우에 한하여 리모델링비 1회 지원, 기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 위의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내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할 것

※ 기타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편성 및 집행

● 시설설비 및 장비구입 기준

- 장비구입 및 시설 설비 등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지출 가능한 시설·장비비

구분	시설설비	장비구입
치료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바닥 및 벽면 쿠션처리 - 안전벽 - 안전문	- 비상벨 - 모서리 안전장치, 보호용품(헬멧, 보호대 등) - 놀이공간 - 영상녹화장비
관찰실	- 원-웨이(one-way) 유리 설치	
기타	-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장애인용 이동경로 확보(경사로, 안내표지, 주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사무공간용 에어컨, 공기정화기(1회 설비에 한함) - 비상경보 설비 - 비상호출장치(비상용 벨, 비상경보등), 승강기, 스프링클러	-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를 위한 사무공간 - 사무용 PC, 프린터기(1회 구입에 한함)

* 지정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

● 강사로 등 사례비 지급기준

* 교육 강사로는 아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정산 시 강사의 자격기준 증명서류 증빙 필수 / 해외연자의 경우 각 거점병원의 강사로 지급기준에 따름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특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초과 (매시간)	200,000원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일반 I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 이상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II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일반 III	최초 1시간	100,000원	1.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초과 (매시간)	50,000원	2.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 강사	1시간	50,000원 이내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2019년부터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금액 : 기타소득세는 8%, 지방소득세(주민세)는
기타소득세의 10%

● 내부 강사료 기준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내부직원(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교수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 시 적용하며, 원외 강사료일 경우 출장여비와 중복 지급 불가

구분		강사료(시간당)	
		원내 강의실	원외 강의실
교수직	정교수	150,000원	180,000원
	부교수	120,000원	150,000원
	조교수 이하	100,000원	130,000원
일반직		70,000원	10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

- 적용대상 :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이 되지 않는 자
-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중 하나만 적용하여 지급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정산

- 수탁기관은 해당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정산증빙서류(통장내역서, 카드 결제 내역서)등은 5년 간 보관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금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산이 완료된 자료를 기초로 집행 내역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 가능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고사항

- 사업수행에 대한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시기	방법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월 10일까지	공문
시설·장비 구축 심의요청서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월말까지(정기), 사유 발생 시(수시)	공문 또는 이메일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차년도 1월말까지	공문
사업성과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3년 주기	공문 및 우편 (실물보고서 제출)
예산전용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발생 시	공문

(1)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예산전용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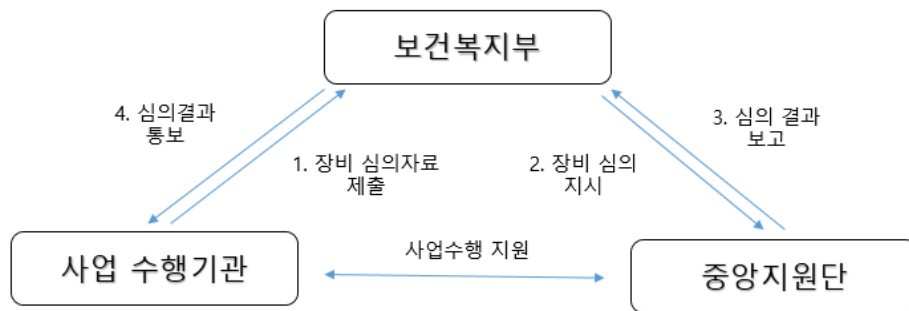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매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 목표·일정, 인력운용, 주요 사업비 편성·집행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있어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비목 간 산출내역을 20% 이상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전용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 및 변경전후 사업 예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2) 시설·장비계획 심의요청서

- 시설 및 장비계획 시 사전에 해당 시설·장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고가의 의료장비 및 기기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

부에 장비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장비계획 심의를 지시하고, 중앙지원단은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원단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비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
-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그림] 장비계획 심의 절차

- 물품·시설·장비 등 당초 사업계획서 승인사항과 상이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심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심의기준
 - (승인기준)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
 - (불승인기준) 사업목적 외 장비계획
 - 항목별 상세 심의 판별 기준

구분	심의 세부항목	판정기준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및 활용계획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시설 확충 및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산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3)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실적 추진현황을 기재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예산 지출 내역 등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4) 사업성과보고서

- 사업 수행기관은 매 3년을 주기로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 재지정 필요성, 재지정 이후의 사업 수행계획을 적시한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5 물품 등의 관리

(1) 물품 등의 관리

- 국고보조금을 통해 구입된 모든 물품 등(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 구입·설치된 물품, 치료 장비, 도구, 서적 등 일체)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국고지원 물품관리 라벨을 부착
- 위 물품 등의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그의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2) 물품 등의 관리 상황 보고

- 관리 주체는 물품관리대장을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고
- 물품 등의 변경(물품 등의 신규 구매, 폐기, 수량 변경 등 일체를 지칭)사항 발생 시 물품 변경 심의요청서와 변경사유 양식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물품관리대장에 기입

6 기타 행정사항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 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 내용 변경
-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주요 담당자(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PM(Project Manager), 행동발달증진센터장 등)의 변경
- 기타 지원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계획 변경

- 사업 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관련 서식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 [서식 1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신청서
- [서식 2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신청서
- [서식 3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서
- [서식 4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서
- [서식 5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 6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
- [서식 7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 [서식 7-1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상세내역
- [서식 8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9호] 예산전용조서
- [서식 10호] 유형자산(비품) 관리대장
- [서식 11호] 국고지원 물품 관리 라벨
- [서식 12호] 결과보고서
- [서식 13호] 정산보고서
- [서식 14호] 성과보고서
- [서식 15호] 서약서 예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식 16호] 내원 보호자 의료 만족도 조사지
- [서식 17호]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 [서식 17-1호] 장비계획 심의양식

서식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신청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 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 2. 시설현황, 운영현황, 운영계획서 등 서류 각 1부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서식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신청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 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 2. 시설현황, 운영현황, 운영계획서 등 서류 각 1부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서식 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서

제 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서식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서

제 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지정서

1.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계획서

20XX. XX

(기관명)

(기관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계획서

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FAX	
	대표자			이메일	
사업비 (‘〇〇년)	원	사업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지정 기관 의무사항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보건복지부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지침 준수
-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등과 연계·협력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와의 공동연구,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지원을 위한 역량의 지속적 강화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사업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 변동사항 발생시 또는 사업계획서 변경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통보
-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공개 원칙 준수
 - ※ 이상의 의무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기간	20 . .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방법 기재) - -		
성과지표	○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 외부 유관기관 연계 ○ 행동문제중재를 위한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연/실인원 ○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횟수 ○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연/실인원 ○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교육 연/실인원 ○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점수		
성과지표 달성계획	○ (성과지표 달성 방안 제시)		
사업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

사업 개요

□ 시행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 운영 목적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및 중증행동문제 치료지원을 위한 공공보건복지 서비스체계 구축

□ 주요 기능

-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접근성 제고
 -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계획 등의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 행동문제 중재 등과 관련한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접근성 제고
 -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 기관 개요

○ 현황 등

(기관명)					
1. 일반현황					
설립주체		해당 시·도			
지역인구수		발달장애인 수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상수	병상	급성 특수	병상 병상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0층, 지하0층		
대지면적	m ² (평)	건물연면적	m ² (평)		
(발달)장애인 등 유관기관 여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등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병원 전경사진-1		병원 전경사진-2 (행동발달증진센터 위치 표기)			
2. 사업개요					
사업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부지/ 건물 위치					
시설 규모					

○ 지역 현황 및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발달장애인 수 (→표는 중고딕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연평균/증감률
인구 수(a)	명	명	명	명/ %
발달장애인 수(b)	명	명	명	명/ %
발달장애인 비중 (a/b)*100%	%	%	%	%

- 진료과목별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① 정신건강의학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② 재활의학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③ 치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④ 기타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 필요 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기재

II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계획

□ 관련 인력 및 역할분담

① 거점병원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주요 역할 수행 계획

진료 등	거점 병원	○ - *	(작성요령)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진료 계획, 관련 진료과 간 협진 및 진료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 등을 기술
	행동 발달 증진 센터	○ - *	(작성요령) 응용행동분석(ABA) 등에 기반한 행동문제 치료 계획,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교육(치료) 계획 등을 기술
연구		○ - *	(작성요령) 행동문제 개입 관련 유관 학술 활동, 발달장애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 생성·관리 계획, 기타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계획을 기술
대외 연계		○ - *	(작성요령)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연계할 외부 기관명,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연계할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술
기타		○ - *	(작성요령) 내부 전문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타 예산집행·행정 등 진료·연구·대외연계가 아닌 추진 내용이 있을 경우 기술

■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및 사업추진 지원 의지

예산지원 계획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1. 행정지원	
	2. 진료지원	
	3. 교육연구지원	
	4.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5. 인력확보	

□ 행동발달증진센터 시설 구축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 필수 구비 요건 충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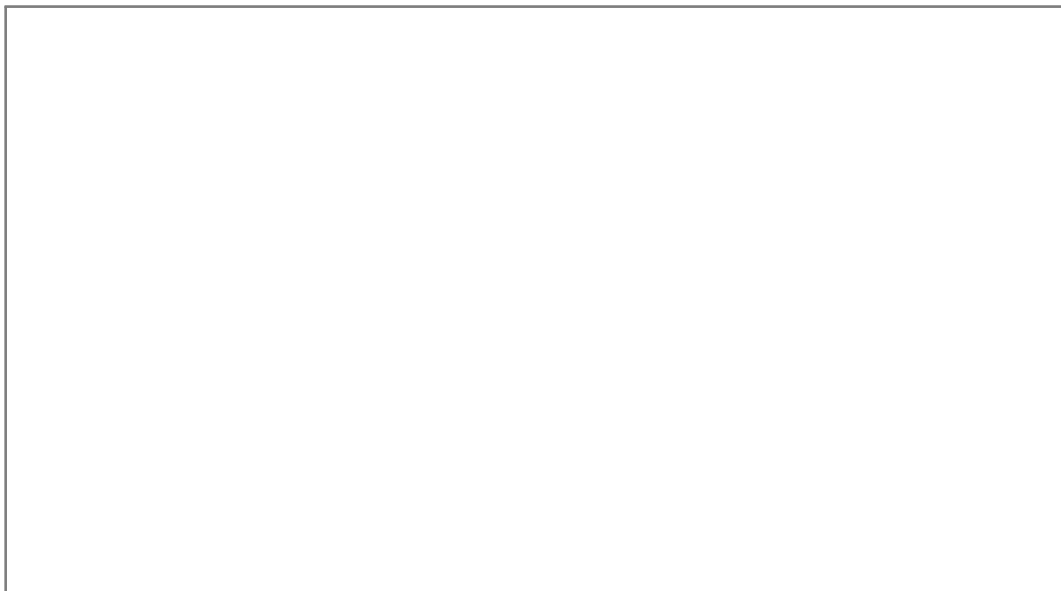
내역	내용	설치계획 혹은 유지여부(→月별 상세 기술)
안전시설	안전벽, 안전문,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등	
관찰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치료실	3개 이상, 안전시설 구비	

○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치료 관련 장비/서적/치료도구 등 구비 계획

내역	내용	구비계획
장 비	(명칭)	(구비필요성 : 문제행동치료와 직접적 관련성, 가격 등 세부사항 및 구비 시점 등 구체 기술)
서 적		
치료도구		

○ 행동발달증진센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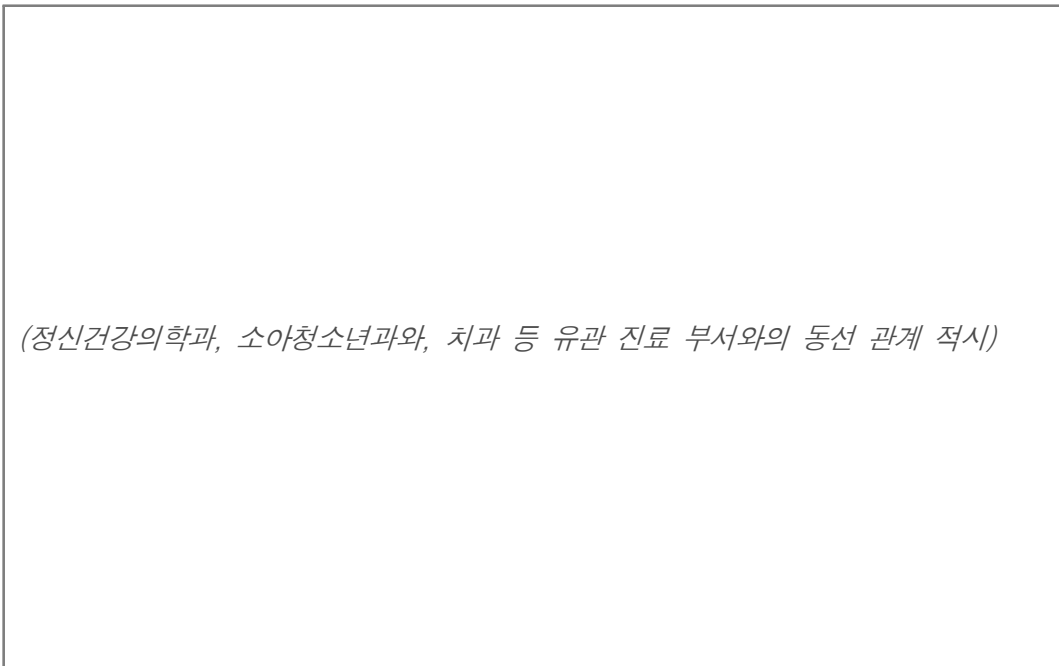
- 행동발달증진센터 소속 건물 평면도



- 행동발달증진센터 시설 평면도



- 행동발달증진센터 접근 동선



III

성과지표 및 목표

영역	수행방법		2023년
발달장애인의료 및 치료 접근성 제고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목표	건
		산출근거	
	외부유관기관 연계 건수	목표	건
		산출근거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목표	연인원/실인원
		산출근거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중증 치료인원	명
		연간 치료인원	명
행동발달 증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목표	시간 (연누적 시간)
		산출근거	
	각종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목표	건
		산출근거	
부모,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만족도 제고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목표	명 (연인원)
		산출근거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목표	명 (연인원)
		산출근거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목표	점
		산출근거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

세부추진과제명	추진일정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23년 월간 사업계획

실행과제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												
(1) 직원 재계약												
(2) 협진 강화												
(3) 발달장애인 협진 회의												
2. 행동발달증진센터												
(1) 인력 추가채용												
(2) 문제행동 치료지원												
(3) 직원 역량 강화 교육												
(4)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전문 부모교육)												
(5) 지역사회 대상 홍보·교육 (심포지엄 및 홍보)												

※ 해당 월에 √ 표시

IV 사업 예산 계획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세부 산출 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비율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시설장비유지비(09)				
		복리후생비(12)				
		기타운영비(16)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재산 조성비	건설비(420)	시설비(03)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기타	반환금 등(710)	예비비(01)				

서식 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

(1) 표지 및 제출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

20XX. XX

(기관명)

(기관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

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FAX		
	대표자		이메일		
사업비 (‘○○년)	원	사업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지정 기관 의무사항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보건복지부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지침 준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등과 연계·협력
 -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와의 공동연구,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지원을 위한 역량의 지속적 강화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사업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 변동사항 발생 시 또는 사업계획서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통보
 -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공개 원칙 준수
- ※ 이상의 의무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요약서

기 관 명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사업기간	20 . . . ~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목표	○ (사업의 목표를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내용	○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운영 방법 기재) - -		
사업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

사업 개요

□ 시행 근거 (→모든 본문 기술은 휴먼명조/15포인트/당해 페이지 형식)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 주요 기능

- 발달장애 치료 프로세스 표준화 및 중증발달장애 기초연구 통합지원
- 발달장애 조기개입 촉진 방안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행동문제 치료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마련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 및 센터운영 컨설팅

□ 기관 개요

- 일반현황

-
-
-
-

II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 운영계획

☐ 관련 인력 및 역할분담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 사업 수행 계획

○ 사업의 목적

-
-

○ 사업의 목표

-
-

○ 사업의 내용

-
-
-

○ 사업의 수행방법

-
-
-

○ 사업의 기대효과

-
-
-

○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의 예산 및 사업추진 지원 의지

예산지원 계획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1. 행정지원	
	3. 교육연구지원	
	4.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5. 인력확보	

○ '23~'24년 세부추진 전략

세부추진과제명	추진일정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IV 사업 예산 계획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세부 산출 내역(연도별 작성)

예산과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비율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시설장비유지비(09)				
		복리후생비(12)				
		기타운영비(16)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재산 조성비	건설비(420)	시설비(03)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기타	반환금 등(710)	예비비(01)				

* 위 분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기관별 예산집행 내역에 따라 필요 시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매년 정부지원 예산을 2022년 예산 교부 총액인 2억8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단, 이 금액은 해당연도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기관의 자체 투입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 2억8천 5백만원을 초과하여 작성 가능

서식 7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서식 7-1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상세내역

○ 사업계획서 변경내역(별지로 작성)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 사업비 변경내역(별지로 작성)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사항 증감액(B-A)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서식 8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〇〇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명				기관장명	
소재지					
국고보조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 최초연도 : (수정)사업계획서 (전체) 1부			
사업기간		20 . . ~ 20 . .			
총 소요사업비(천원)			국고 보조금 신청(해당년도, 천원)		
합계	국비	자부담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신청잔액
		※ 자부담 확보한 경우 기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9 예산전용조서

예 산 전 용 조 서

1. 사 업 명 : 00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2. 전용사유 :
3. 기대효과 :
4. 예산 전용 총 금액 : 원
5. 전용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사유
관	항	목	변경전(A)	변경 후(B)	증감(B-A)	
합계			원	원	원	
사무비 소계			원	원	원	
사무비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시설장비유지비(09)				
		복리후생비(12)				
		기타운영비(16)				
	여비(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사업비 소계			원	원	원	
사업비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재산조성비 소계			원	원	원	
재산 조성비	건설비(420)	시설비(03)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기타 소계			원	원	원	
기타	반환금 등(710)	예비비(01)				

서식 11 국고지원 물품 관리 라벨

○○거점병원 국고지원 물품			
사업년도		관리번호	
물 품 명			
모 델 명			
취득일자			
구매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물품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내용 추가 가능

※ 물품 등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 구입·설치된 물품, 치료장비, 도구, 서적 등 일체를 지칭

서식 12 결과보고서

I. 사업개요 (1쪽 이내)

기 관 명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사업기간	20 .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 (센터면적, 병상 수,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II. 인력구성 (조직도 및 인력구성 명단)

--	--

III. 발달장애인 등 의료이용 현황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이용 현황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 수	실 환자 수	연 환자 수	평균재원일수
○○○○년					

☐ 진료과목별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구분 (○○○○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정신건강 의학과	F70~79					
	F84					
	합계					
재활의학과	F70~79					
	F84					
	합계					
치과	F70~79					
	F84					
	합계					
기타	F70~79					
	F84					
	합계					

☐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현황

구분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아동기 (만 7~12세)		청소년기 (만 13~18세)		성인기 (만 19세 이후)	
○○○○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 행동문제 중증 환자 판단기준 : 1)매우 낮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인지기능 능력을 갖고 있거나 2)자해·타해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3)CGI(Clinical Global Impressions) 5점 이상 또는 4)GAS(Global Assessment Scale) 40점 이하인 경우 5)기타의 이유(심한 상동행동 등)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중증환자로 판단 한 경우

☐ 거점병원 치료 발달장애인 명부 (○○○○년)

순번	연령	성별	진단 코드	최초 진단 일자	타과치료 개시/ 종료일	초기 평가 내용/ 치료 내용
1						
2						
3						
:						

* 타과치료 개시일은 거점병원에 등록되어 타진료과 진료를 개시한 날짜입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 치료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명부 (○○○○년)

순번	연령	성별	진단 코드	최초 진단 일자	타과치료 개시/ 종료일	초기 평가 내용/ 치료 내용
1						
2						
3						
:						

* 초기평가내용은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등록되어 각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 평가한 내용입니다.

IV.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비고
○월		○월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 및 추진시기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며 추진실적은 가급적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

V. 사업추진성과

영 역	수행방법	집계 단위	전년 실적	금년 실적
1.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치료 접근성 제고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협진 건수	건	건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건수	연계 건수	건	건
2. 행동문제 증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치료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중증 치료인원		
		연간 치료인원	명	명
3. 행동발달증진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연평균 누적 교육시간	시간	시간
		연평균 운영인원	명	명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숍,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공유 건수	건	건
4. 부모,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 만족도 제고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교육인원	명	명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교육인원	명	명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만족도 점수	점	점

VI. 예산집행실적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률(%) (B/A*100)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시설장비유지비(09)				
		복리후생비(12)				
		기타운영비(16)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소 계						
사업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소 계						
재산조성비	건설비 (420)	시설비(03)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소 계						
기타	반환금 (710)	예비비(01)				
		반환금 등 기타(02)				
소 계						
합 계						

※ 위 분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병원별 예산집행 내역에 따라 필요 시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음

VIII. 기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관련과 협진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연계 성과 등)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필요·건의사항

서식 13 정산보고서

I.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a)	지자체부담금(b)	자기부담금(c)	합 계(d=a+b+c)	보조금비율(e=a÷d)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f)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 이월액(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i-k)

당기분집행잔액 (m=d-f)	전기이월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이자 (p)	차기 이월액(q)	반환대상액 (r=o+p+ k-q)	보조금 반환액 (s=r×e)	자기부담금 반환액 (t=r-s)

II.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
	일용임금(04)				%
	기타인건비(05)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					
합 계					%

III. 보조비목별 일괄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보수(01)				
					
	소계				
여비(220)	국내여비(01)				
					
	소계				
.....					
합 계					

서식 14 성과보고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최종 실적보고서

○○○ 병원						
1. 병원 현황						
설립주체						
인구 현황 (시·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증감률	
	인구 수(a)	명	명	명	명/ %	
	발달장애인 수(b)	명	명	명	명/ %	
	발달장애인 비중 ((a/b)*100%)	%	%	%	% %	
병원종별				병상 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 m ²			건물연면적	000 m ²	
(발달)장애인 등 유관기관 여부	권역재활병원(O, X) 공공어린이재활병원(O, X) 장애인구강진료센터(O, X) 장애인보건의료센터(O, X) 어린이병원(O, X)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병원 전경사진-1				병원 전경사진-2(행동발달증진센터 위치 표기)		
2.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20XX. XX. XX - 2022. XX. XX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센터면적, 병상 수,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총 사업비 (천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국고					
	지방비					
	병원 자부담					
* 지방비, 자부담 등은 있는 경우 기재하며, 필요시 예산 구분을 추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1 일반 현황

I.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등 의료이용 현황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이용 현황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 수	실 환자 수	연 환자 수	평균재원일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진료과목별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① 정신건강의학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재원일수(일)
2018년	F70~79					
	F84					
	합계					
2019년	F70~79					
	F84					
	합계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② 재활의학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18년	F70~79					
	F84					
	합계					
2019년	F70~79					
	F84					
	합계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③ 치과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18년	F70~79					
	F84					
	합계					
2019년	F70~79					
	F84					
	합계					
201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④ 기타

구분		외 래(명)		입 원(명)		
		초진	연 환자수	실 환자수	연 환자수	평균 재원일수(일)
2018년	F70~79					
	F84					
	합계					
2019년	F70~79					
	F84					
	합계					
2020년	F70~79					
	F84					
	합계					
2021년	F70~79					
	F84					
	합계					
2022년	F70~79					
	F84					
	합계					

* 필요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기재

□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유아기 (만 6세 이전)	중증			
	경증			
아동기 (만 7~ 12세)	중증			
	경증			
청소년기 (만 13~ 18세)	중증			
	경증			
성인기 (만 19세이후)	중증			
	경증			

* 행동문제 중증 환자 판단기준 : 1)매우 낮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인지기능 능력을 갖고 있거나 2)자해·타해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3)CGI(Clinical Global Impressions) 5점 이상 또는 4)GAS(Global Assessment Scale) 40점 이하인 경우 5)기타의 이유(심한 상동행동 등)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중증환자로 판단한 경우

II. 3년간 성과지표 달성 실적

영역	수행방법	집계 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1. 발달장애인 의료 및 치료 접근성 제고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협진 건수	건	건	건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건수	연계 건수	건	건	건
2.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치료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중증 치료인원			
		연간 치료인원	명	명	명
3. 행동발달증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연평균 누적 교육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연평균 운영인원	명	명	명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숍,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공유 건수	건	건	건
4. 부모,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 만족도 제고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교육인원	명	명	명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교육인원	명	명	명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만족도 점수	점	점	점

III.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총액		금액						
		비율						
인건비	보수 (01)	금액						
	일용임금 (04)	비율						
	기타인건비 (05)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01)	비율						
	공공요금 및 제세 (02)	금액						
	피복비 (03)	비율						
	시설장비유지비 (09)	비율						
	복리후생비 (12)	비율						
	기타운영비 (16)	비율						
여비	국내여비 (01)	금액						
	국외여비 (02)	비율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비율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비율						
건설비 (420)	시설비 (03)	금액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비율						
반환금 등 (710)	예비비 (01)	비율						
	반환금 등 기타 (02)	금액						

* 위 분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병원별 예산집행 내역에 따라 필요시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음

IV. 시설/장비 현황

[illegible]

* 처분이 제한된 중요물품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A~G)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A. 사무용기기, B. 전기·통신기기, C. 의료기기, D. 치료도구, E. 서적, G. 기타

※※ 사용불가능, 매각 등의 사유 기입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 기입

유의 ▶ 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수탁기관의 내부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운영 성과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영역	항목	충족여부
의료인력	·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인력을 5명 이상 보유	
진료영역 등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 보유	
	·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	
	·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	

관련자료 증빙	○ - * (작성요령)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부, 발달장애 치료인력이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증인지 여부 등 발달장애인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
---------	---

■ 관련 인력 및 진료과목별 역할분담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 협진 성과

구분 (단위 : 건)	정신건강의학과 →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치과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내과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협진 실시	의뢰	협진 실시	의뢰	협진 실시	의뢰	협진 실시	의뢰	협진 실시	의뢰	협진 실시
2020년												
2021년												
2022년												



협진 성과	○ - * (작성요령) 협진 의뢰(컨설팅)가 이루어진 횟수 및 실제 협진이 이루어진 횟수 (건수)를 위 표에 기재(필요시 진료과를 추가하여 표 수정), 협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 통합 사례회의 운영 사례, 진료 코디네이터를 통한 협진 효과성 제고 성과 등을 기재
-------	--

■ 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간 연계 성과

연계 성과	○ - * (작성요령) 의료(거점병원)와 행동문제 치료(행동발달증진센터) 간 연계 내용을 기재
-------	--

■ 거점병원 운영 우수사례

우수 사례	○ - * (작성요령) 발달장애인 진료 대기시간 감축, 병원 이용·진료 등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타 의료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 사례를 적시
-------	---

2) 행동발달증진센터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영역	항목	충족여부
전문인력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인 이상	
시설 등	·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 공간 등이 구비된 치료실 3개 이상	
	· 원-웨이(one-way) 유리가 설치된 관찰실	
	·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	

관련자료 증빙	○ - * (작성요령)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등 자료를 적시, 관찰 시설과 치료실 등 시설의 경우 필요시 사진 첨부
------------	--

- 관련 인력 및 역할분담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 중증 행동문제 치료 제공내용 및 성과

행동치료 제공내용	○ - * (작성요령) 행동치료 제공 내용,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의 연계사항(예 : 월1회 행동문제 완화여부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확인 등)을 기재
추진성과	○ - * (작성요령) 행동치료의 효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등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적시

■ 행동문제 치료 우수사례

우수 사례	○ - * (작성요령) 중증의 행동문제가 어떠한 개입을 통하여 완화되었는지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개입 전 - 개입 과정 - 개입 성과를 구분하여 적시
-------	---

■ 부모, 가족 등 교육 성과

부모(가족) 교육 실시내용	○ — * (작성요령)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 등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 내용, 프로그램 등을 기재
추진성과	○ — * (작성요령) 부모(가족) 교육이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례 등을 기재

■ 대외활동 성과

대외활동 내용	○ — * (작성요령) 지역사회를 통한 행동문제 치료 연계·확산 노력, 기타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추진한 대외활동 내용(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적시
추진성과	○ — * (작성요령)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공고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 발굴 또는 예방 등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적시

3) 사업 추진 성과

■ 연구실적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 년월	권, 호 (쪽수)	SCI여부	
	제1저자 (진료과)	교신저자 (진료과)					SCI	학진

(작성요령) 2019년~2022년 하반기까지의 학진 등재지 이상 학술지나 SCI 등재지에 발표한 전문진료 관련과목 전체 전문의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을 제시. 논문초록의 첫 페이지 첨부

■ 종사자 역량강화 노력

종사자 역량강화 노력	○
	- *
(작성요령)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기타 병원에 소속된 기존인력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 슈퍼비전 등 추진사항을 적시	

■ 예산 집행 효율성

예산집행 효율성	○
	- *
(작성요령)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반 노력, 보건복지부 예산 외 병원의 예산 자체조달 사항 등을 기재	

3 향후 사업운영 계획(안)

1) 재지정 필요성 및 발전방향

■ 재지정 필요성

필요성	○ - * (작성요령) 해당 의료기관이 향후 3년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재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	---

■ 그간 운영상 힘들었던 점, 개선노력 등

그간 운영상 힘들었던 점	○ - * (작성요령) 지난 3년간 사업추진 시 기관 내·외부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사업 운영 시 애로점 등을 기술
개선노력	○ - * (작성요령) '그간 운영상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기타 사업운영 과정에서 운영방식·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기술

■ 향후 3년간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

비전	○ - *
장기 발전방향	○ - *

2) 향후 운영계획

■ 관련 인력 및 역할분담

① 거점병원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조직도	
------------	--

소속부서 및 직위	성 명	주요 경력 및 연구분야	근무기간	역할 및 업무기여도

■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6년	1분기		
	2분기		

■ 주요 역할 수행 계획

진료 등	거점 병원	○ - *	(작성요령)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진료 계획, 관련 진료과 간 협진 및 진료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 등을 기술
	행동 발달 증진 센터	○ - *	(작성요령) 응용행동분석(ABA) 등에 기반한 행동문제 치료 계획,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교육(치료) 계획 등을 기술
연구		○ - *	(작성요령) 행동문제 개입 관련 유관 학술 활동, 발달장애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 생성·관리 계획, 기타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계획을 기술
대외 연계		○ - *	(작성요령)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연계할 외부 기관명,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연계할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술
기타		○ - *	(작성요령) 내부 전문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타 예산집행·행정 등 진료·연구·대외연계가 아닌 추진 내용이 있을 경우 기술

■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및 사업추진 지원 의지

예산지원 계획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1. 행정지원	
	2. 진료지원	
	3. 교육연구지원	
	4.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5. 인력확보	

3) 성과지표 및 목표

■ 성과지표 및 목표

영역	수행방법	집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1. 발달장애인 의료 및 치료 접근성 제고	1-1. 발달장애인 협진 건수	현진 건수	건	건	건
	1-2. 외부 유관기관 연계 건수	연계 건수	건	건	건
2.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2-1. 발달장애인 각종 행동발달증진치료 프로그램 제공	치료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명(연인원) 명(실인원)
	2-2. 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비중	중증 치료인원			
		연간 치료인원	명	명	명
3. 행동발달증진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3-1.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로부터 슈퍼비전 교육	연평균 누적 교육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연평균 운영인원	명	명	명
	3-2. 각종 심포지움, 워크숍, 세미나, 증례토론 등을 통한 치료정보 및 지식공유 건수	공유 건수	건	건	건
4. 부모,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 만족도 제고	4-1.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심리·정서 지원 또는 행동문제 이해·대응 기법 교육	교육인원	명	명	명
	4-2. 특수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교육인원	명	명	명
	4-3.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족도 조사	만족도 점수	점	점	점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

세부추진과제명	추진일정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4) 사업 예산 계획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세부 산출 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비율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임금(04)				
		기타인건비(05)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 및 제세(02)				
		피복비(03)				
		시설장비유지비(09)				
		복리후생비(12)				
		기타운영비(16)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외여비(02)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재산 조성비	건설비(420)	시설비(03)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기타	반환금 등(710)	예비비(01)				

* 위 분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병원별 예산집행 내역에 따라 필요 시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정부지원 예산을 2023년 예산 교부 총액인 3억4천2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단, 이 금액은 해당연도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자체 투입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 3억4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작성 가능

서식 15 서약서 예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 약 서

생년월일: _____ 성명 : _____

본인은 위 아동이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행동문제 전문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치료방침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치료사 ()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귀원에서 행하는 행동치료와 부모교육 및 각종 행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참여하겠습니다.
2. 행동치료 전 평가는 필수 진행과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여부와 치료유형(개별치료, 부모교육 등)이 결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치료는 주 1~2회로 진행되며 행동 변화에 따라 치료횟수 조정 및 종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정해진 치료시간을 준수하겠으며 2회 이상 무단결석 및 4회 연속 치료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치료프로그램 중 치료진이 유의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 및 부상, 자·타해, 무단이탈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방침에 협조합니다.
6.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슈퍼비전을 위해 프로그램 시간에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7.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금함에 동의합니다.
8. 행동수정 치료의 지도감독을 위해 응용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자문 위원에게 사례검토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귀원의 조치에 순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행동발달증진센터 CCTV촬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 (인)

서식 16 내원 보호자 의료 만족도 조사지

작성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안녕하십니까? OOOOO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입니다.

본 설문지는 치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의료서비스의 개선점과 보완점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I.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환자 성별	① 남 ② 여
2. 환자 연령	① 만 7세 미만 ② 만 7~12세 ③ 만 13~18세 ④ 만 19세 이상
3.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경기·인천 ④ 강원 ⑤ 세종·충북 ⑥ 대전·충남 ⑦ 전북 ⑧ 광주·전남 ⑨ 대구·경북 ⑩ 울산·경남 ⑪ 제주
4. 진료과목 (복수응답 가능)	① 정신건강의학과 ② 치과 ③ 내과 ④ 외과 ⑤ 재활의학과 ⑥ 기타()

II.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본원의 진료 수속 절차 및 진료 대기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본원에서의 진료 및 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나 종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는 프로그램 참가 시 CCTV 촬영이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본원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할 때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1) 만일 불만족(④,⑤)에 체크하신 경우,

어떤 시설·상황에서 안전이 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본원에서의 의료서비스·프로그램 종결 후에,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앞으로도 본원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본 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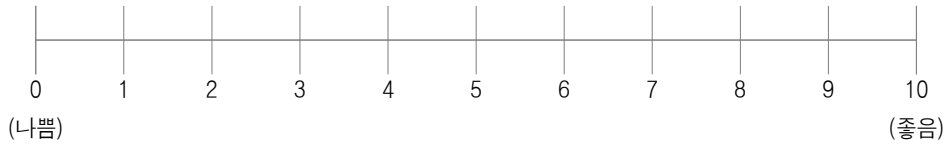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일 불만족(④,⑤)에 체크하신 경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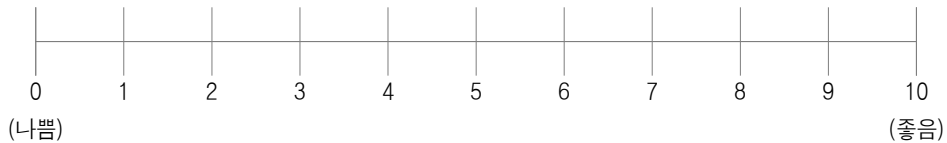
(복수 응답 가능)

- ① 의료진의 친절 및 자세한 설명
- ② 병원 내 청결도
- ③ 진료 절차의 신속성
- ④ 진료 및 각종 검사에 대한 설명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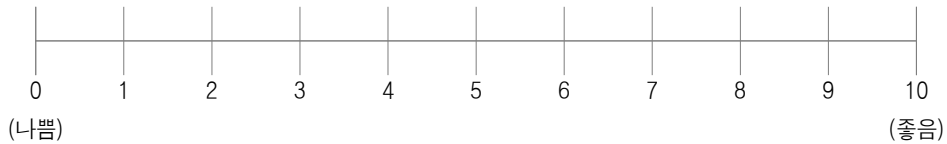
10. 0~10의 점수를 이용하여, 진료를 주로 담당한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11. 0~10의 점수를 이용하여, 치료를 주로 담당한 치료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12. 0~10의 점수를 이용하여, 타과 협진을 담당한 진료 코디네이터(혹은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13. 본원 혹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로서비스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의료만족도 조사 점수는 II-1번~9번(6-1, 9-1제외) 항목은 각 문항을 역점수로 환산하여 합계하고, 10~12번 항목은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합계한 후, 5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서식 17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장비계획 심의요청서					
기관	기관명				
	전화		전 자 우 편		
사업내역	구매 대수	0000외 00종 00대	장비 예산	국비	원
				병원부담	원
				합계	원
위의 사항과 같이 OO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비구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계획 심의양식 <서식 17-1호>					

서식7-1 장비계획 심의양식

장비계획 심의양식

장비명(한글)		모델명 또는 규격	제조회사 또는 대리점
장비명(영문)		1.	
수량 및 단위	수량: 단위:	2.	
예정가격		3.	
설치예정일	년 월 일	설치예정장소	
취 득 구 분	☐ 기존장비대체 (기존보유대수 :)		
	사유: ☐ 노후화 ☐ 구식화 ☐ 고장수리불가(기술검토의견 첨부)		
	☐ 추가소요 ☐ 신규도입 ☐ 기타()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도입 필요성 및 사업 연관성	- 도입 필요성을 가급적 수치화된 근거와 기타 법적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 발달장애인의 진단·평가·치료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식약처 허가여부, 임상적 유용성 포함)
2	공간배치 적합성 및 활용계획	- 행동발달증진센터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장소, 면적(㎡) - 유지보수 계획(예. 연1회 정기점검, 소요비용) - 월평균 사용횟수 및 시간, 추정 사용년수 - 수가 발생 여부, 연구계획 등 - 구 장비 등 활용계획(예. 처분 또는 재사용)
3	장비운용 역량	-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 예산단가의 적절성 -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 예산확보 여부
(중앙지원단 작성) 심의결과		
- 중앙지원단은 심의세부항목에 따른 심의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발 행 일 2023년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044-202-3960